

석면건축물 제외 []승인 []불승인 통보서

승인번호	제 호
건축물명	
성명(대표자)	
건축물 소재지	(전화번호:)
승인의 경우	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를 승인합니다.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(교육감 또는 교육장) 직인
불승인의 경우	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를 승인하지 않습니다.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(교육감 또는 교육장) 직인